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83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4.  
발의자 : 박정·백혜련·윤후덕  
어기구·김두관·박재호  
이찬열·이훈·박홍근  
유동수·김병관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기본계획에서 정한 신·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과 신·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 신설)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 
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6조(연차별 실행계획) ① ~ ③<br>(생 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| 제6조(연차별 실행계획) ① ~ ③<br>(현행과 같음)<br><u>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 |